



미국 법무부

인권국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한편 인권 보호를 위한 공공 지침서 첨부:
차별로부터의 법적 보호에 관한 참고 지침서[최종 개선일 3월 30, 2015]

많은 연방 기관들이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조건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법률을 집행합니다. 이 참고 지침서는 모든 연방 인권 보호 조치들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다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i) 에볼라와 관련 차별 상황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특정 법률들, (ii) 그런 법률을 집행하는 연방 기관들.

집행 지역	기관	법률 개요	불만 접수처
장애	<p>미국 법무부: 인권국(Civil Rights Division)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 기관들의 모든 운영에서 사람의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권한을 많은 다른 연방 기관들과 공유합니다. 미국 장애인법(ADA) 및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4조 하에서 개인은 (a) 주요 일상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거나, (b) 그런 결함의 기록이 있거나, (c)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재활법 1973, 제 504조</u>, 29 U.S.C. § 701 이하는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 수혜 기관들이 오직 장애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며, 모든 연방 시행 프로그램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u>미국 장애인법 (ADA) 제 II 및 III장</u>, 42 U.S.C. § 12101 이하는 공립 학교에서의 차별을 포함하여 공공 기관의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서 (II장) 그리고 대부분의 사립 학교, 단과대학 및 종합 대학교에	<p>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Disability Rights Section - NYA 9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33</p> <p>음성 : 202-307-0663 팩스 : 202-307-1197 홈페이지 : www ADA gov</p> <p>ADA 전문가와 상담하려면 :</p>

<p>장애 (계속)</p> <p>ADA 및 제504조는 또한 "연관 차별"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 또는 연관성을 이유로 한 개인에 대한 차별도 금지합니다. 장애에 근거한 보복도 금지됩니다.</p> <p>인권국의 장애인권리부(Disability Rights Section)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 편의시설(예: 호텔, 음식점, 민간이 운영하는 유통 장소)에 대한 접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합니다.</p> <p>다양한 기관들: 이 참고 지침서에 열거된 것들을 포함한 많은 연방 부처 및 기관들이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법률을 집행합니다. 그런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부분적 목록은 아래에 열거된 차별의 구체적인 범주들을 참고하십시오.</p>	<p>의 한 차별을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공공 편의시설에서의 (III장) 차별을 금지합니다.</p>	<p>음성 : 800-514-0301 TTY: 800-514-0383</p> <p>불만은 연방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다음으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Federal Coordination and Compliance Section 9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30</p> <p>음성: 202-307-2222 팩스: 202-307-0595 홈페이지: www.usdoj.gov</p>
--	--	---

교육	<p>미국 교육부: 인권사무소(OCR)는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수혜 기관들이 특히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행위(괴롭힘 및 희롱 포함)를 금지하는 연방 법률을 집행합니다. 보복도 금지됩니다.</p> <p>미국 교육부는 모든 공립 학군, 거의 모든 공립 및 사립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교 그리고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그 밖의 일부 기관들에게 연방 지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p> <p>인권사무소(OCR)는 또한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가와 관계 없이 교육 상황에서 공립 초등, 중등 및 고등 학교들을 포함한 공립 기관들에 대하여 ADA를 집행합니다.</p> <p>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된 차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ed.gov/ocr/docs/ocr-factsheet-ebola-201412.pd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권법 1964, 제VI장, 42 U.S.C. § 2000d 이 하는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 수혜 기관들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 (제한적 영어 구사력)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행위 (괴롭힘 및 희롱 포함)를 금지합니다. • 재활법, 제504조, 29 U.S.C. § 701 <u>이하</u>. 위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1100 음성 : 800-421-3481 TDD: 800-877-8339 팩스 : 202-453-6012 이메일 : ocr@ed.gov 홈페이지 : www.ed.gov/ocr 온라인 불만 제기 양식 : http://www.ed.gov/ocr/complain_intro.html
교육(계속)	<p>미국 법무부: 인권국의 교육기회실(Educational Opportunities Section)은 공립 학교, 단과 대학, 종합 대학교 그리고 법무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 및 기타 수혜 기관들이 특히 인종, 피부색 및 출신 국가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권법 1964, 제IV장, 42 U.S.C. § 2000c-6은 공립 학교,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교들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행위(괴롭힘 및 희롱 포함)를 금지합니다. • 민권법 1964, 제VI장, 42 U.S.C. § 2000d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Educational Opportunities Section - PHB 9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30

<p>교육 (계속)</p> <p>근거하여 차별하는 행위(괴롭힘 및 회통 포함)를 금지합니다. 보복도 금지됩니다.</p> <p>교육기회실(Educational Opportunities Section)과 장애인 인권실(Disability Rights Section)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법무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수혜 기관들 그리고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가와 관계 없이 모든 공립 학교, 단과 대학, 종합 대학교 및 대부분의 사립 학교, 단과 대학, 종합 대학교들이 사람의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연방 법률을 집행합니다.</p>	<p><u>이하.</u> 위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동등교육기회법 1974</u>, 20 U.S.C. § 1701 <u>이하는</u> 특히 주립 및 지역 교육 기관들이 학교 간에 또는 학교 내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한 고의적인 차별을 통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p>음성: 202-514-4092 음성: 877-292-3804 이메일: education@usdoj.gov 홈페이지: www.usdoj.gov</p>
--	---	---

<p>고용</p> <p>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특히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부터 직원 및 취업 지원자들을 보호합니다. 보복도 금지됩니다.</p> <p><u>15인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고용주들에</u> 의한 차별은 채용 및 고용 프로세스의 모든 면에서 금지됩니다.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적용하는 입사 지원, 채용, 해고, 승진, 교육, 임금 또는 기타 조건, 혜택 또는 고용 조건.</p> <p>고용 상황에서의 장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p> <p>http://www.eeoc.gov/laws/types/disability.cf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민권법 1964, 제VII장</u>, 42 U.S.C. § 2000e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또는 성별에 근거한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은 또한 차별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차별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용 차별에 대한 조사나 소송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 <u>ADA, 제I장</u>은 민간 영역 그리고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장애가 있는 적격한 사람에 대한 차별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은 차별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차별을 고발하거나 고용 차별에 대한 조사나 소송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보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은 또한 사업 운영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고용주들이 장애가 있는 적격한 지원자나 직원의 알려진 신체 또는 정신적 제한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u>재활법 1973, 501조 및 505조</u>는 ADA의 제I장과 동일한 근거로 연방 정부에서 장애가 있는 적격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p>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131 M. Street, NE Washington, DC 20507</p> <p>현장 사무실로 고발하거나 연락하려면: 음성: 800-669-4000 정보 및 출판 센터: 음성: 800-669-3362 음성: 202-663-4900 TTY: 202-663-4494 TTY: 800-800-3302 홈페이지: www.eeoc.gov</p>
--	---	---

고용 (계속)	<p>미국 노동부: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국(OFCCP)은 연방 정부와 계약이나 하청 계약을 맺은 기업들 및 연방 자금을 받는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사들이 특히 인종, 피부색 및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 법률을 집행합니다.</p> <p>미국 노동부: 인권센터(CRC)의 대외시행국(OEE)은 WIA의 I장 하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수혜 기관들 및 WIA 121(b)항에 열거된 원스톱(One-Stop) 파트너들에 의한 차별 또는 동등 기회 요건의 위반에 관한 불만을 평가, 조사 및 판결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명령 11246은 자격을 부여하는 정부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들이 고용 결정 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민권법 1964, 제VI장, 42 U.S.C. § 2000d <u>이하</u>. 위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재활법, 제504조, 29 U.S.C. § 701 <u>이하</u>. 위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인력투자법 1998(WIA), 제188조, 42 U.S.C. § 5309은 WIA I장-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및 활동들 그리고 원스톱(One-Stop) 시스템의 일부인 프로그램들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보조금 수혜 기관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 국가 및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U. 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200 Constitution Avenue, NW, Room C3310 Washington, DC 20210 음성 : 866-4-USA-DOL 팩스 : 877-889-5627 홈페이지 : www.dol.gov U.S. Department of Labor Director - Civil Rights Center Office of External Enforcement 200 Constitution Avenue, NW Room N4123 Washington, DC 20210 음성: 팩스: 202-693-6505 이메일: CRCEExternalComplaints@dol.gov
고용 (계속)	<p>미국 법무부: 인권국의 고용소송실(Employment Litigation Section)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고용주들이 특히 인종, 피부색 및 출신 국가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 법률을 집행합니다. 고용소송실은 공공 고용에서의 차별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 및 국적법(INA), 8 U.S.C. § 1324b는 고용주들이 출생지, 출신 국가, 혈통, 모국어, 억양 때문에 또는 외모나 말투가 "외국인" 같다는 이유로 또는 특정한 이민이나 시민권 지위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Employment Litigation Section - PHB 9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30 음성 : 202-514-3831

고용 (계속)	<p>및 관행에 관한 불만을 접수합니다. 차별에 대한 개인적 불만은 EEOC로 제기해야 합니다(위의 설명 참고).</p> <p>미국 법무부: 인권국의 이민 관련 불공정 고용 행위 담당 특별 법무관실(OSC)은 <u>직원이 3명 초과, 15명 미만인</u> 고용주들이 고용, 해고 및 모집 또는 유료 직업 소개와 관련하여 출신 국가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OSC는 또한 <u>직원이 4명 이상인</u> 고용주들이 고용, 해고, 채용이나 유료 직업 소개와 관련하여 시민권 지위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권법 1964, 제VII장, 42 U.S.C. § 2000e. <p>위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p>	<p>TTY: 202-514-6780 팩스 : 202-514-1005 팩스 2: 202-514-1105</p> <p>U. 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Office of Special Counsel – NYA 9000 9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30</p> <p>피고용자 핫라인 : 음성 : 800-255-7688 TTY: 800-237-2515</p> <p>고용주 핫라인 : 음성 : 800-255-8155 TTY: 800-237-2515</p> <p>이메일 : osccrt@usdoj.gov</p>
고용 (계속)	<p>다양한 기관들: 수혜 기관들에게 연방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각 연방 부처나 기관은 수혜 기관들이 고용주의 규모와 관계 없이 고용 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u>15명 이상의 직원</u>)가 EEOC의 권한 적용을 받을 경우, 대부분의 연방 기관들이 접수된 불만을 EEOC로 이관할 것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법, 제504조, 29 U.S.C. § 701 <u>이하</u>. 위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ADA, 제II장, 42 U.S.C. § 12101 <u>이하</u>. 위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p>불만은 연방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다음으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Federal Coordination and Compliance Section 950 Pennsylvania Avenue, NW</p>

	<p>연방 정부 내 다양한 기관들도 <u>직원이</u> <u>15명 미만인</u> 고용주들에 의한 것을 포함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ADA의 제II장을 집행합니다.</p>		<p>Washington, DC 20530 음성: 202-307-2222 팩스: 202-307-0595 홈페이지: www.usdoj.gov</p>
주거	<p>미국 주거도시개발부(HUD): 연방 법률은 특히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주거 차별을 금지합니다. 공정 주거 및 기회 균등 사무국(FHEO)은 <u>연방 법률</u>을 감독 및 집행하며, 모든 미국인들이 자신이 선택하는 주거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차별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은 HUD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민권법 1968, 제VIII장</u>, 42 U.S.C. § 3601 이하(공정주거법)(개정)는 주택의 판매, 임대 및 용자 그리고 다른 주택 관련 거래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상황 및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 <u>민권법 1964, 제VI장</u>, 42 U.S.C. § 2000d 이하. 위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 <u>재활법, 제504조</u>, 29 U.S.C. § 701 이하 및 <u>ADA, 제II장</u>, 42 U.S.C. § 12101 이하. 위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 <u>주택 및 지역 개발법 1974, 제I장, 109조</u>, 42 U.S.C. § 5309는 HUD의 지역 개발 포괄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Development and Block Grant Program)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및 활동들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또는 종교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p>U. 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 451 Seventh Street, SW, Room 5204 Washington, DC 20410-2000 음성 : 202-619-8041</p> <p>핫 라인 : 음성 : 800-669-9777 음성 : 202-708-0836 TTY: 800-927-9275 팩스 : 202-708-1425 홈페이지 : www.hud.gov</p> <p>온라인 불만 제기 양식 : http://portal.hud.gov/hudporta1/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online-complaint</p>

주거 (계속)	<p>미국 법무부: 인권국의 주택 및 민사 집행실(HCES)은 특히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주택 접근 권리를 집행합니다. 이 기관은 주택 공급자가 어떤 차별적 <u>방식이나 관행</u>을 행하거나 주택 공급자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불만을 접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권법 1968, 제VIII장, 42 U.S.C. § 3601 이하(공정주거법). 위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p>U. 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Housing and Civil Enforcement Section 9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30</p> <p>음성 : 202-514-4713 팩스 : 202-514-1116 이메일 : fairhousing@usdoj.gov</p>
일반에 개방된 시설 및 서비스	<p>미국 법무부: 미국 검찰은 주 정부나 그의 산하 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소유, 운영, 관리하는 공공 시설이나 서비스의 사용 시 개별적 차별 사례에 대한 불만을 접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권법 1964, 제III장, 42 U.S.C. § 2000b는 공립 학교나 공립 단과 대학 또는 종합 대학교 이외의 주 정부 또는 그의 산하 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 시설이나 서비스의 사용 시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p>개인적인 불만은 적절한 미국 지방 법원이나 지역 내 가까운 미국 검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미국 법무부: 인권국의 주택 및 인권조사실(Housing and Civil Enforcement Section)은 특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이 없이 공공 편의시설(호텔, 음식점, 민간이 운영하는 유흥 장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합니다. 이 기관은 공공 편의시설의 제공자가 차별적 방식이나 관행을 행한다는 불만을 접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권법 1964, 제 II장, 42 U.S.C. § 2000a는 호텔, 음식점 및 유흥 장소 같은 공공 편의시설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개인들은 II장에 따른 그들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p>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Housing and Civil Enforcement Section 9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30</p> <p>음성 : 202-514-4713 팩스 : 202-514-1116 이메일 : fairhousing@usdoj.gov</p>
연방 자금의 수혜 기관들이 제공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들	<p>다양한 기관들: 연방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연방 부처나 기관은 그의 수혜 기관들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제한적 영어 구사력 포함), 장애 및 기타 이유에 근거하여 차별을 행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권법 1964, 제 VI장, 42 U.S.C. § 2000d <u>이하</u>. 위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 재활법, 제 504조, 29 U.S.C. § 701 <u>이하</u>. 위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p>불만은 연방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다음으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Federal Coordination and Compliance Section 9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30</p> <p>음성 : 202-307-2222 팩스 : 202-307-0595 홈페이지 : www.usdoj.gov</p>

최초 발행 2014년 12월; 최종 수정 2015년 2월